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472호 2019. 10. 2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 호선 외 2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1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1호 도로계획시설(도로:소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168호(2017.12.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사업명: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

○ 명칭: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218	원창동 345-3	원창동 356-12	일반 도로	-	2017.12.18. 서구2017-168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122	소 3-1	원창동 354-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	4	국지도로	8	소 3-1	원창동 343-2	일반 도로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3,962	1,392					
1	원창동	342-11	전	1.544	7	최영*	인천시 동구 송현동 **-**			
2	원창동	342-10	전	539	62	강보*	김포시 통진읍 응정로 ***번길 **			
3	원창동	356-18	도	50	38	서구*	인천시 서구 서곶로 ***			
4	원창동	375	도	979	382	기획재정*	세종시 갈매로 *** 정부세종청사 *동			
5	원창동	354-6	대	16	16	박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			
6	원창동	342-17	전	5	5	이점*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			
7	원창동	342-4	전	278	69	박장*	인천시 서구 가정동 ***-*			
8	원창동	354-7	대	857	25	박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			
9	원창동	342-3	전	264	4	유옥재	인천시 서구 독정로 **,**동 ***호			
10	원창동	343-10	전	3	3	양성*	인천시 서구 세어로 **			
11	원창동	343-3	전	40	4		미등기			
12	원창동	353	대	343	67	김중* 외2인	인천시 서구 세어로 **			
13	원창동	343-4	전	314	52	안총*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 한신아파트 ***동 ****호			
14	원창동	353-1	대	433	33	김진*	인천시 서구 세어로 **			
15	원창동	343-7	전	152	6	채병* 외2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주공아파트 ***동 ***호			
16	원창동	343-5	전	598	17	이장*	인천시 서구 석남동 ***-** 한양빌라 *-***			
17	원창동	343-6	전	502	50	김정*	인천시 서구 면개포로 **번길 *			
18	원창동	343-9	전	157	110	장인* 외1인	인천시 서구 세어로 **-*			
19	원창동				2		미등록필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원창동	344	대	195	51	강관*	인천시 서구 검암로 **번길**,***동 ****호			
21	원창동	345-3	잡	1,898	66	기획재정*	세종시 갈매로 *** 정부세종청사 *동			
22	원창동	354-9	대	40	40	박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			
23	원창동	354-8	대	999	29	박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			
24	원창동	354-1	답	12,466	199	주재*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 *동 ***호			
25	원창동	353-14	대	16	16	박근*	인천시 서구 세어로 **			
26	원창동	353-15	대	8	8	박근*	인천시 서구 세어로 **			
27	원창동	353-7	대	431	18	채수*	인천시 서구 원창동 **			
28	원창동	353-8	대	540	7	양성*	인천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66블럭1롯트검단이-편한세상아파트 ***-***			
29	원창동	353-10	대	295	6	주영*	인천시 서구 세어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343-6	건물	A=13.0m^2	1동		김정*	인천시 서구 면개포로 **번길 *			
2	원창동	353	건물	A=17.0m^2	1동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3	원창동	353	건물	A=15.0m^2	1동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세어로 **	
4	원창동	342-4	비닐하우스	A=42.0m^2	1동		박장*	인천시 서구 가정동 ***-*			
5	원창동	345-3	한전주	81260 681 세어지2	1ea		한국전력공*	나주시 전력로 **			
6	원창동	375	한전주	81260 471 세어지6	1ea		한국전력공*	나주시 전력로 **			
7	원창동	375	채신주		1ea		한국통*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			
8	원창동	375	소화전		1ea		인천서부소방*	인천시 서구 서곶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7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우심산업개발 (대표자 : 강민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7블록
   나. 대지면적 : 43,831㎡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8,217.9146㎡ (지하 3층, 지상 47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1,4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100호, 근린생활시설 1개동
   마. 사 업 비 : 790,234,062,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21. ~ 2023. 5. 31.

5. 변경사항

가) 연면적 변경[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레이아웃 변경, PIT 조정, 오피스텔 부대시설 추가(계절창고), 지하층 우수저류조 신설 등]

- 기존 : 288,211.408㎡
- 변경 : 288,217.9146㎡

나) 공동주택 코어 변경

다) 주차배치변경 및 통행동선 변경

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코리아신탁(주) (대표 최익종)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나. 대지면적 : 41.802㎡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03,166.9414㎡ (지하4층, 지상49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1,12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523,401,310.0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30. ~ 2022. 10. 30.

5. 변경사항

사업주체 변경[(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 코리아신탁(주)]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 변경 · 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정로 341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0.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0-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4-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41 (신현동)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땀.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3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52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산수종합목재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3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56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동우종합목재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4-7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0-6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16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4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32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8-9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0-4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12-7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10-2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35 (왕길동)	검단출장소-18913(18.07.27)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7-1 (왕길동)	검단출장소-40886(16.12.05)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7-2 (왕길동)	검단출장소-40886(16.12.05)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7 (왕길동)	검단출장소-40886(16.12.05)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80 (왕길동)	검단출장소-16955(15.06.01)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80-1 (왕길동)	검단출장소-16955(15.06.01)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74 (왕길동)	검단출장소-21977(19.08.28)호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8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707번길 9 (공촌동)	건물 멸실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66 (왕길동)	검단출장소-14642(17.05.18)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28 (왕길동)	검단출장소-12961(18.05.26)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30 (왕길동)	검단출장소-12961(18.05.26)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71 (왕길동)	검단출장소-38116(17.12.30)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13 (왕길동)	검단출장소-25725(16.07.28)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가동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5 (왕길동)	검단출장소-24875(16.07.21)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만남기사휴게소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12 (왕길동)	검단출장소-18050(16.06.01)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36 (왕길동)	검단출장소-17993(19.07.12)호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광이엔씨 (대표 조영훈)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1블록
   나. 대지면적 : 42,974㎡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8,001.1932㎡ (지하2층, 지상20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735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238,808,308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14. ~ 2022. 06. 30.

5. 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변경(대광이엔씨, 대광건영→대광이엔씨)

나.사업기간 변경(2019.10.14.~2022.06.30.→2019.10.31.~2022.07.15.)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규칙의 일부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

1) 평가위원의 자격

현행) 7급 이상의 공무원

개정)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안 제3조)

2) 위원회의 구성

현행) 위원장은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안 제4조)

나. 그 밖에 조문의 오타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규정을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전화032-560-4158, FAX560-27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032-560-4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규칙의 일부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

1) **평가위원의 자격**

현행) 7급 이상의 공무원

개정)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안 제3조)

2) **위원회의 구성**

현행) 위원장은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안 제4조)

나. 그 밖에 조문의 오타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규정을 수정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7급”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를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 ---------- ---------- ---------- ----------. --------- ---------- ----------.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1.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3. ---------- 사람으로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 ----------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5.10.]	제8조(수당 등) ① ---------- 위원--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삭제 <2016. 9. 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⑫ 삭제 <2016. 9. 13.>

⑬ 삭제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6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기존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 구유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3 (FAX 560-272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기존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 구유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잔여지중”을 “잔여지 중”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하게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산인도전”을 “재산 인도 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를 “단·실·”로, “·요”를 “필요”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사양서”를 “설명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번호	소 재 지 (구, 동)	지번	지목 (주용도)	면적 (㎡)	현 재 용 도	재산분류사항			변경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	변경 사유
						재산 종류	재 산 관리관 변경전	재 산 관리관 변경후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생 략)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2. ---------- 잔여지 중----------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 (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 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할 수 있다.	④ ---------- 하게 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 재산인도 전----------.
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한다.	② ---------- 감정평가업자----------.
제22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 단・실・---------- 필요----------.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4. ---------- 설명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심의결과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소통협력담당관)에게 2019. 11.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통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560-4121 (FAX 560-2719)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언론인
3.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민소통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 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6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6호(2016.01.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소로2-101호선, 사업명: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토지 등록전환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3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

○ 명칭: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2	101	8	8	192.9	-	192.9	-	1,512
변경	도로	소로	2	101	8	8	192.9	-	192.9	-	1,553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7. 3. 20.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도시기반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기정	395-203	대	21	21	임홍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39번길 8-28(상동)	부천농업협동조합	신상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03	대	21	2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	변경없음	395-215	도	375	3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3	기정	395-214	대	15	15	고경종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변경	395-214	대	15	1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4	기정	395-216	대	8	8	강전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9 대명아파트 101-1105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김순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 67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검암지점	근저당권	
						김창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06번길38,101-401(검암동,천우하이빌)	농협은행주식회사 외 1	북인천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6	대	8	8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5	기정	395-151	도	7	7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151	도	7	7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6	기정	395-213	대	41	41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신한은행	일산덕이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3	대	41	4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7	기정	395-212	대	23	23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101-611(문래두산위브)	검단농업협동조합	오왕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2	대	23	23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8	기정	395-205	답	65	65	김옥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0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건지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05	답	65	6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9	기정	395-202	답	581	581	국	기획재정부				
	변경	395-202	답	581	58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0	기정	395-208	대	8	8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9				
	변경	395-208	대	8	8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1	기정	395-206	대	1	1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45(오류동)	㈜신한은행	검단산단금융센터	근저당권	
	변경	395-206	대	1	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2	변경없음	395-207	도	75	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3	기정	369-14	대	1	1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4	대	1	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4	기정	369-15	대	4	4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5	대	4	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5	기정	369-12	도	93	93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2	도	93	93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6	기정	산213-2	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69-18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369-20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변경없음	산182-10	임	32	32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18	변경없음	369-16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395-209	대	2	2	오정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3				
	변경	395-209	대	2	2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0	기정	395-204	대	15	15	이준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6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395-204	대	15	1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1	기정	395-211	종	4	4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변경	395-211	종	4	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2	기정	395-210	전	5	5	이권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35				
	변경	395-210	전	5	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3	기정	395-217	임	6	6	이종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검단아이파크아파트 103-602				
	변경	395-217	임	6	6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	변경없음	395-218	도	4	4	국	국토교통부				
계	기정			1,512㎡							
	변경			1,553㎡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변경	395-212	화장실	블록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5.1㎡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 101-611(문래두산위브)	
			간판	3.5×1.5, 철제기둥 2.5m	1식			
2	변경	395-211	휀스	H=1.5m	9m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3	변경	395-202	창고	샌드위치 판넬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35.30㎡	최점홍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와북로 228-5	
4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함석 지붕	12.48㎡	김문원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향나무(수령 30년)	4주			
5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9.2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수목	앵두, 수령 7년	1주			
			수목	사철, 수령 7년	1주			
			수목	장미, 수령 7년	1주			
			수목	관상수, 수령 7년	1주			
			담장	세멘블록, H=1.7m	8.5m			
			대문	적벽돌문주, 3.2 X 2.0, 슬래브지붕	1식			
6	변경	395-208	수목	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향나무, 수령 30년, H:5m	1식			
			수목	무궁화나무,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5년, H:3m	1식			
			수목	감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밥알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수목	라일락,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사철나무, 수령 30년, H:3m	1식			
			화단	조경석	2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	변경	395-207	수목	소나무	3주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54(오류동)	
			수목	가시오가피	4주			
			수목	사철	1주			
			수목	무궁화나무	3주			
			수목	장미	1주			
			화단	조경석	10㎡			
			휀스	철제기둥, H:1.5m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8㎡			
8	변경	395-214	수목	메타세콰이어(수고 15m)	1식	고경종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9	변경없음	395-213	한전주	8327E 622 안동지 78	1	한국전력		
10	변경없음	395-215	한전주	확인불가	1	한국전력		
11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2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2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3 안동지 77-B1	1	한국전력		
13	변경없음	395-207	한전주	8327E 741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4	변경없음	395-217	한전주	8327E 841 안동지 76	1	한국전력		
15	변경없음	산182-10	한전주	8327E 843 안동지 76-L1	1	한국전력		
16	변경없음	395-214	체신주	KT-입상1호	1	KT		
17	변경없음	395-213	체신주	확인불가	1	KT		
18	변경없음	395-202	체신주	확인불가	1	KT		
19	변경없음	395-207	체신주	확인불가	1	KT		
20	변경없음	395-217	체신주	오류20 1-2	1	KT		
21	변경없음	산182-10	체신주	오류20 L1	1	KT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를 수 있는 과태료 절차 집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적합성을 도모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2층 (심곡동)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전화032-560-4898, FAX032-560-2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032-560-48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를 수 있는 과태료 절차 집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적합성을 도모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6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를 수 있는 과태료 절차 집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적합성을 도모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2층 (심곡동)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전화032-560-4898, FAX032-560-2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032-560-4898)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를 수 있는 과태료 절차 집행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적합성을 도모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